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-62호

「학생인건비 계상기준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-9호, 2018.2.2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8월 1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###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개정고시

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학생연구원 및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”을 “학생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박사과정 및 박사후연구원”을 “박사과정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[별표 2]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<u>학생연구원 및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계상기준) 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. 이 경우 학사과정, 석사과정, <u>박사과정 및 박사후연구원</u>으로 구분하여 정하되, 연구책임자 및 학과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박사후연구원 :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학생연구</u> <u>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계상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박사과정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